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

2021. 11.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권고	회수		감액		추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8건	3	5	0	2	11,983	0	0	0	0
1	□□□□과 □□지소 □□지소	관사관리 부적정		1							
2	□□□□과 □□지소 □□지소	연가 복무관리 및 보상비 지급 부적정	1			1	763				
3	□□지소	시간외근무시간 허위등록	1								
4	□□과	단체 및 개인 연회비 납부 부적정	1			1	11,220				
5	□□과	돼지열병 항체보유상황 확인검사 소홀		1							
6	□□지소 □□지소 □□지소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및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1							
7	□□지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8	□□지소	복합기 임차 사용에 따른 물품관리 부적정		1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사관리 부적정**

소 관 청 동물위생시험소

관 계 부 서 □□□□과, □□지소, □□지소

내 용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과 및 □□지소, □□지소에서는 관사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1조에 따르면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 1급 및 2급을 제외한 그 밖의 관사 등이라고 되어있고, 동 조례 제56조에 따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도요금 및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는 1급·2급 관사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3급 관사의 경우 수도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커튼은 예산으로 경비를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과, □□지소, □□지소에서는 2018. 6월 ~ 2021. 8월간 3급 관사(□소 2개실, □□지소 5개실, □□지소 7개실)를 운영하면서 수도계량기가 분리되어있지 않다는 사유로 사용자의 수도요금을 기관에서 부담하였으며, □□지소의 경우 2021년 6월 18일 관사에 대하여 예산으로 3,575천원 상당의 커튼을 구매하여 교체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사에 대한 수도계량기 분리 등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연가 복무관리 및 보상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동물위생시험소

관 계 부 서 □□□□과, □□지소, □□지소

내 용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과, □□지소, □□지소에서는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르면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도록 되어있다.

$$\frac{\text{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text{12개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그리고 동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병가가 아닌 병가기간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연간 15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경우 위 계산식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서 제외하고 연가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과, □□지소, □□지소에서는 [표 1]과 같이 병가를 15일 이상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부적정

하게 산정하여, 적정 연가일수보다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저축하거나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연가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현황

구분	연도	소속	직급	성명	부적정 연가 일수	적정 연가 일수	내용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액	비고 (병가 사용 일수)
		계						763,210원	
복무관리 부적정	2020	□□□□과			22	20	연가 2일 초과사용		15일
	2020	□□지소			19	18	연가 4시간 초과사용		46일
연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	2020	□□□□□과			15	14	연가보상비 1일분 과다지급	108,210원	26일
	2020	□□지소			21	18	연가보상비 3일분 과다 지급	324,840원	57일
	2020	□□지소			21	18	연가보상비 3일분 과다 지급	330,160원	49일
연가 저축 부적정	2020	□□□□□과			21	19	연가 1일분 과다저축		25일

조치할 사항 **동물위생시험소장**은

①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 763,21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시간외근무시간 허위등록**

소 관 청 동물위생시험소

관 계 부 서 □□지소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근무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 없이 균등분배하거나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을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퇴근 후 사적용무, 심야복귀 후 초과근무를 입력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급)은 2020. 6. 30. [표]와 같이 사적용무 및 심야복귀 후 초과근무를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입력한 사실이 있다.

[표] 초과근무 허위 등록 현황

일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초과근무 인식시간 (복무관리 시스템)	위반 행위
2020.6.30	동물위생 시험소 □□□□	□□□급	□□□	09:00 ~ 22:33	· 19:00경 퇴청하여 사적용무 후 22:00경 복귀하여 22:33 지문인식 등록 후 퇴근함.

조치할 사항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해당자에 대하여 부당수령액을 환수하시고, 부당수령액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시기 바라며, 처분요구일 이후 3개월 간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학회 단체 및 개인 연회비 납부 부적정**

소 관 청 동물위생시험소

관 계 부 서 방역과, □□지소, □□지소, □□지소

내 용

동물위생시험소(□□과, □□지소, □□지소, □□지소)에서는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도 □□시 □□□ □□□에 소재하는 '□□□□□□학회[1]'에 【표】와 같이 단체 연회비 및 개인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표】 단체 연회비 납부현황(□□□□□□학회)

(단위 : 천원)

연도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지소	□□지소	비고
2017년도	500	400	400	400	
2018년도	500	400	400	400	
2019년도	500	400	400	400	
2020년도	500	400	400	400	
2021년도	500	400	400	400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와 같은 법 제165조에 따라 설치된 전국적 협의체, 개별 법령으로 협회비 등 부담금 지원 근거가 명시된 협회에 한해 부담금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 □□□□□□학회 회칙 제3조(목적) 본 회는 동물위생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보교환으로 그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의해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동 학회에 대하여는 연회비 등을 편성·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부서 및 지소에서는 2021년도 □□□□□□학회로부터 단체회비 납부 안내를 받고 단체회비 500천원을 같은 해 8. 9. 납부하는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개별법 등 지원 근거에 대한 검토 및 2020년도에는 학술대회 참석도 하지 않은 채 학술대회 참가 명목으로 단체회비(□□, □□, □□, □□) 8,500천원을 부당하게 납부하였다.

더욱이 위 부서 및 지소에서는 2021. 7. 30. □□□□□□학회로부터 2021년도 □□□□□□학회로부터 개인회비 납부 안내를 받고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연간 구입하는 명목으로 개인회비 30천원 총 83명 2,490천원을 납부하는 등 사업소 및 지소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76명 11,220천원을 부당하게 개인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동물위생시험소장은

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 개별법 등 지원 근거가 없는 학술단체에 부담금을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또한 정회원 개인회비 명목으로 납부된 11,220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돼지열병 항체보유상황 확인검사 소홀**

소 관 청 동물위생시험소

관 계 부 서 질병진단과, □□지소, □□지소, □□지소

내 용

동물위생시험소(□□□□과, □□지소, □□지소, □□지소)에서는 돼지열병[2]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양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48호, 시행 2016. 6. 7.) 제17조에 의하면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열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하여 축주가 발급한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돼지를 우선으로 검사하되 항체보유 비율이 검사두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 이내에 해당 돼지의 출하 농장에 대해 확인검사인 혈청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축장에서 돼지열병 항체검사 표본 검사결과 양성률 80% 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돼지열병 조기에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 고열·식욕결핍·설사·변비·피부 청색증 및 뒷다리를 못쓰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을 나타내며 한번 발생하면 치료 방법이 없고 감염된 돼지는 전부 죽게 되는 돼지질병 중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중요한 질병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부서 및 지소에서는 [표]와 같이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 2021. 9. 10.까지 총 122건 중 25건을 최소 8일에서 최대 222일을 지체하여 확인검사를 하는 등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돼지열병 검사 항체양성률 80%미만 농가 확인검사 지체현황

	항체 양성율 80% 미만				확인검사			지체일	비고
	축주명	체혈일자	검사일자	양성률	체혈일자	검사일자	양성률		
1		2018-06-04	2018-06-08	79%	2018-11-20	2018-11-21	100%	**156일**	본서
2		2018-06-04	2018-06-08	63%	2018-07-02	2018-07-05	95%	**17일**	
3		2018-06-14	2018-06-15	75%	2018-10-15	2018-10-23	100%	**120일**	
4		2018-11-06	2018-06-06	78%	2019-01-29	2019-01-30	100%	**228일**	
5		2019-02-15	2019-02-15	50%	2019-03-28	2019-03-29	100%	**32일**	
6		2019-05-15	2019-05-15	75%	2019-06-24	2019-06-28	85%	**34일**	
7		2019-09-02	2019-09-03	75%	2019-09-26	2019-09-27	100%	**14일**	북부
8		2019-12-04	2019-12-09	30%	2019-12-26	2019-12-27	100%	**8일**	
9		2020-02-17	2020-02-18	50%	2020-03-23	2020-03-30	100%	**31일**	
10		2020-02-19	2020-02-20	33%	2020-03-17	2020-03-20	89%	**19일**	
11		2020-02-19	2020-02-20	0%	2020-03-17	2020-03-20	100%	**19일**	
12		2020-03-02	2020-03-03	67%	2020-03-23	2020-03-30	100%	**17일**	
13		2020-09-08	2020-09-11	5%	2020-10-15	2020-10-20	100%	**29일**	동부
14		2020-09-11	2020-09-17	44%	2020-10-06	2020-10-15	89%	**18일**	
15		2020-10-05	2020-10-8	17%	2020-10-28	2020-10-29	100%	**11일**	
16		2019-11-04	2019-11-19	11%	2019-11-26	2019-12-11	100%	**12일**	
17		2020-03-13	2020-03-17	78%	2020-04-02	2020-04-09	100%	**13일**	
18		2021-01-26	2021-01-28	71%	2021-03-05	2021-03-05	100%	**26일**	
19		2020-02-17	2020-02-18	50%	2020-03-23	2020-03-30	100%	**31일**	
20		2020-03-02	2020-03-03	67%	2020-03-23	2020-03-30	100%	**17일**	서부
21		2020-04-05	2020-04-07	78%	2020-05-11	2020-05-12	100%	**25일**	
22		2020-06-08	2020-06-25	19%	2020-08-14	2020-08-14	100%	**40일**	
23		2019-04-16	2019-04-17	70%	2019-05-15	2019-05-16	88%	**19일**	
24		2019-09-02	2019-09-05	55%	2019-09-26	2019-09-30	100%	**15일**	
25		2020-08-12	2020-08-19	40%	2020-09-11	2020-09-13	95%	**15일**	

조치할 사항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 당직근무자가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 등을 위반하여 확인검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돼지열병 사전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및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동물위생시험소

관 계 부 서 □□지소, □□지소, □□지소

내 용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지소, □□지소에서는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간 공동계약(3자 계약)을 통해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토록 하여야 하고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나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지침」(2017. 4. 17., 환경부 예규 제602호)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안)의 일반조건 제7조에 대가의 지급은 배출자가 운반자에게 수집·운반비를, 처분업자에게 처리비를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처리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수집·운반비용은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비용은 처분업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지소 및 □□지소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분담이행방식 형태로 공동계약 하였음에도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확인하지 않고, 수집·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함에도 일부[3] 이를 지키지 않고 수집·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합산[4]하여 기재하고 개별단가는 비워둔 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지소·□□지소·□□지소는 아래 [표]와 같이 수집·운반단가와 처리단가에 맞도록 대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수집·운반업자가 다시 처리업자에게 처리비용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가를

3) 수집.운반단가와 처리단가 미 구분 계약 건 : □□지소(2021년), □□지소(2020년~2021년)
4) 예시 : 계약서 상에 수집.운반비를 kg당 2,900원으로만 기재(실제 수집.운반단가 2,400원 + 처리단가 500원 = 합계 2,900원 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

지급함으로 인해 실제 의료폐기물의 위탁처리에 따른 처리비용이 위탁계약한 처분업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의료폐기물 처리 내역(2019~감사일 현재까지)

부서	구분	계약업체명	소재지	2019년			2020년			2021.8월까지		
				운반단가·처리단가(원)	처리량(kg)	처리비용(천원)	운반단가·처리단가(원)	처리량(kg)	처리비용(천원)	운반단가·처리단가(원)	처리량(kg)	처리비용(천원)
□□지소	수집·운반업자			1,600	4,550	7,280	2,440	13,009	31,741	2,440	5,409	13,197
				2,400	4,376	10,502						
	처분업자(중간처리업자)			1,300	4,550	5,915	-	-	-	-	-	-
				500	4,376	2,188	460	13,009	5,984	460	5,409	2,488
□□지소	수집·운반업자			1,900	8,626	16,389	1,840	8,653	15,922	1,840	5,553	10,218
	처분업자(중간처리업자)			400	8,626	3,450	460	8,653	3,980	460	5,553	2,554
□□지소	수집·운반업자			1,500	3,076	4,614	2,340	7,663	17,931	2,340	5,394	12,622
				2,300	4,087	9,400						
	처분업자(중간처리업자)			1,300	3,076	3,999	-	-	-	-	-	-
				500	4,087	2,044	460	7,663	3,525	460	5,394	2,481

자료 : 동물위생시험소(□□지소, □□지소, □□지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동물위생시험소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처리비용이 지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관련자에게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아래의 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동물위생시험소

관 계 부 서 □□지소, □□지소, □□지소

내 용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1. 지출 증빙서류 미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Ⅲ-4 '각 업무추진비 공통'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2019. 9. 10.부터 2021. 2. 18.까지 식사제공, 선물구입 등 50만 원 이상의 17건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증빙서류로써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1]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연번	해당부서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출금액	미비내용
1	□□지소	2019. 9.2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추석명절 선물구입	644,000	50만 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한 명단 미첨부
2		2019.11.2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화합 위한 회식	880,000	
3		2020. 2.2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설명절 선물구입	703,000	
4		2020. 8.2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식사제공	510,000	
5		2020.10.2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추석명절 선물구입	732,000	
6		2020.11.3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화합 행사준비	800,000	
7		2021. 2.1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격려품 제공	808,500	

연번	해당부서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출금액	미비내용
8	□□지소	2019. 9.1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격려품 구입	757,320	50만 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한 명단 미 첨부
9		2020. 1.1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격려품 구입	736,640	
10		2020.10. 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추석명절 선물구입	746,550	
11		2020.11.2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단합대회	840,000	
12		2021. 2. 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격려품 구입	723,650	
13	□□지소	2019. 9.1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추석명절 선물구입	627,000	
14		2020. 1.2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설명절 선물구입	918,000	
15		2020. 9.2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추석명절 선물구입	1,225,000	
16		2020.10.29.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단합대회	1,020,000	
17		2021. 2.17.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격려품 구입	1,045,800	

2. 지출 예산과목 부적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Ⅲ-4-1-나'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호 다항에 따르면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마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문방문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격려금품을 지출 할 때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2018. 10. 23.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등 2건에 대해서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2]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연번	해당부서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출금액	미비내용
1	□□지소	2018.10.2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구입	197,000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되지 않음
2		2019. 2.2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구입	180,000	

조치할 사항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복합기 임차 사용에 따른 물품관리 부적정**

소 관 청 동물위생시험소

관 계 부 서 □□지소

내 용

동물위생시험소 □□지소는 동물과 축산물의 질병·위생검사에 시설·장비를 구축하여 도내 가축과 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1-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수 물품에 해당하는 복합기 및 복사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세워 회계과로부터 적정량의 정수만큼 배정(승인)을 받아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표]와 같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복합기를 정수물품으로 배정받아 구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복합기 임차 현황

(단위 : 원)

연번	임차기간	임차내용	비 고
1	2018.1.1.~12.31.	프린터 1대, 복사기 2대	매월 임차료 업체에 지급
2	2019.1.1.~12.31.	프린터 1대, 복사기 3대	

※ 2020년도부터 복사기, 복합기는 정수물품 항목에서 제외됨

그 결과 복합기 등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보다 4,907,000원 정도 예산 절감을 못하였다.

붙임 : 복합기 임차 대비 구입에 따른 절감가능액 비교검토

조치할 사항 **동물위생시험소 □□지소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물품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복합기 임차 대비 구입에 따른 절감가능액 비교검토

(단위 : 원)

연 도	임차내용	지출금액
2018년	프린터 1대, 복사기 2대	4,320,000
2019년	프린터 1대, 복사기 3대	5,364,000
2020년	프린터 1대, 복사기 3대	5,370,000
2021년	복합기 4대	4,764,000
합 계		19,818,000

복합기구매	지출금액	비 고
신도리코, TH/CM2073(컬러)	3,971,000	차액 4,907,000원 발생
삼성전자, CN/SL-X401LX	2,860,000	
신도리코, CN/MF2083(흑백)	1,980,000	
fujifilm, VN/ApeosPort-Ⅶ	1,100,000	
소모품 예상 비용	5,000,000	
합 계	14,911,000	

※ 현재 임차 장비와 비슷한 물품을 선정하여 비교(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기준)